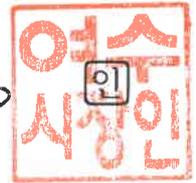


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문화소외
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5 월 17 일

여 수 시 장 김기/김



여수시 조례 제2079호

붙임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1부

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 활동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문화소외계층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- 나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.
 - 다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7조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- 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 등)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
2.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
3.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
4. 문화예술인재 육성
5.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
2. 문화예술 관련 교육
3.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
4.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
5.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
6.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